

사회복지법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이사회 회의록

- **회의일시** : 2018년 4월 30일(월) 15:00 ~ 15:40
- **회의장소** : 교구청 5층 사목상황실(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100)
- **이 사** (이사 8명, 감사 2명)
 대표이사 - 이병호
 이 사 - 김영수, 김봉술, 경규봉, 양석현, 장상원, 서철승, 정식수
 감 사 - 권순호, 최종문
- **참 석 자**(이사 6명)
 대표이사 - 이병호
 이 사 - 김봉술, 경규봉, 양석현, 서철승, 정식수

1. **시작기도** : 모두 일어서서 상임이사의 선창으로 시작기도를 하다.

이병호 의장은 이사회에 참석해주신 이사들께 인사한다. 그리고 전체 8명 임원 중에 6명의 이사들이 출석하였으므로 이사회 개회를 선언한다.

2. 전 회의록 안건 낭독 및 승인

김봉술 상임이사는 전 회의록 주요내용을 설명한 후 전차회의록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는지 묻는다. 의문사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참석이사 전원이 이의 없이 승인한다.

3. 의안 및 심의안건, 심의결과

No.	안 건	심의결과
1)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 정관변경 : 목적사업 (전라북도 보완요청에 따른 재논의)	원안가결

4. 안건 심의 내용 : 정관변경(안)

이병호 의장 : 오늘 의안은 법인 정관 변경 건으로 목적사업 변경에 관한 것입니다. 정관 제38조(정관변경)는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참석해주신 이사님들께서 논의하여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임이사께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봉술 이사 :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허가해주는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이사회 때 논의되었던 목적사업 이외의 정관 변경 사항은 전주시에서 허가하여 등기 완료 하였습니다.

본 법인의 목적사업 제 5조(사업의 종류) ①항 14호는 변경된 용어에 따라 수정하였고, 19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합니다.

16호와 21호는 같은 내용이 두 번 반복되어 있어 16호는 삭제하고 21호는 맨 마지막 23호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리고 21호에는 지역자활센터 설치 운영을 추가하였는데, 고창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2호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의한 긴급전화센터 운영은 여성긴급전화 1366전북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신설하였습니다.

이병호 의장 : 위의 법인 정관 변경의 취지와 내용을 참조하시어 변경사항에 관하여 논의하여 주시고 그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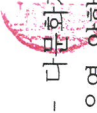

양석현 이사 : 법인의 목적사업 변경 및 추가는 법인의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에 동의합니다.

경규봉 이사 : 양석현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병호 의장 : 양석현 이사의 동의와 경규봉 이사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사님들의 의견을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체 이사 동의)

이병호 의장 : 이사님들 모두 동의 하였으므로 법인 정관의 목적사업 변경(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p>제5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애인 복지사업 및 시설의 설치운영 2. 교구내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연락 및 조정.지원 3. 지역사회 사회복지 관계 기관과의 연락 협의 4. 긴급재해복구와 구호사업 5. 교구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6.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자 활용 7. 각종 후원금 및 기부금의 조정, 분배 8.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 보육시설 설치운영 10. 노숙인 복지시설 위탁 운영 11. (아동)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12. 지역아동센터 설치운영 13.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 14. 재가노인지원센터 설치운영 15. 사회복지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한 수익성 사업 16.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1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18. 노인공동생활가정 설치운영 19.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20.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21.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p>② 이 법인은 제①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p>	<p>제5조(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 음의 사업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4. 재가노인지원시설 설치운영 16. (삭제) 19. (삭제) 23. 기타 이 법인의 목적사업에 필요한 사업 (추가) 21. 지역지원센터 설치 운영 (추가) 22.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6에 의한 긴급전화센터 운영 	   <p>- 용어 변경</p> <p>- 21호와 겹침</p>  <p>-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안함.</p> <p>- 목적사업의 맨 마지막 호(23호)로 이동</p> <p>- 추가(지원센터운영 중이며, 누락되어 추가)</p>  <p>- 신설</p>

5. 폐회(마침기도)

이병호 의장 : 오늘 논의사항 이외 다른 기타 토의사항이 있으신지요?
(모두) 없습니다.

이병호 의장 : 다른 토의사항이 없으시면 폐회 동의 바랍니다.

경규봉 이사 : 오늘 이사회 폐회를 동의합니다.

정식수 이사 : 경규봉 이사님의 동의에 재청합니다.
(이사 전체 동의)

이병호 의장 : 오늘 바쁘신 중에도 법인 이사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들의
고견으로 법인이 좀 더 발전하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하며, 오늘 의안이 심의 종료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로 마치다.)

마침 시간 : 15시 40분

위 기록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참석임원이 서명·날인함.

2018년 4월 30일

대표이사	이 병 호	(인) 
이 사	김 봉 술	(인) 
이 사	경 규 봉	(인) 
이 사	양 석 현	(인) 
이 사	서 철 승	(인) 
이 사	정 식 수	(인) 



사회복지
법 인

전주가톨릭사회복지회